

## 한·중·일 국제팩토링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Factoring of Korea, China and Japan\*

박 세 훈\*\* Se-Hun Park

#### 목 차

I. 서론	IV. 한·중·일 국제팩토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국제팩토링의 일반적 특징	V. 결론 및 요약
III. 한·중·일 국제팩토링의 현황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 정책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 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

\* 본 논문은 2014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제1저자

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제팩토링, 팩터, 신용담보, 매출채권관리, 추심

## I. 서론

2000년 이후 국제상거래에서 대금결제방식은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급감하고 송금방식 및 외상거래가 증대되었다. 이는 결제방식이 선진화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수출자측면에서는 신용위험 및 금융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신용위험 및 금융부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팩토링과 같은 무역금융에 관한 지원 및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팩토링은 수출자의 신용위험을 제거하고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과 같은 개도국에서도 수출기업의 운전자금확보를 위한 무역금융으로 인식되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팩토링 거래규모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와 비교하여 국제팩토링이 발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무역상대국인 중국 및 일본의 국제팩토링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국제팩토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첫째, 박광서(2007)는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팩토링 활용증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수출팩토링에 관한 문제점과 중소수출기업 활용증대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배정한(2008)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으로서 국제팩토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팩토링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김동윤(2012)은 “국제팩토링거래의 활성화 요건과 대책”에서 전통적인 대금결제방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기능과 UNIDROIT협약을 통해 국제팩토링을 분석하여 국제팩토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국제팩토링의 운영실태와 중소기업 활용지원방안

및 결제방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국제팩토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일본의 국제팩토링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검토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실무적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국제팩토링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연구의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기존선행과의 차별성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제2장에서는 국제팩토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서 국제팩토링의 의의, 기능 및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국제팩토링제도의 현황을 도입 및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의 국제팩토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 및 요약으로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사항을 요약·정리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글을 끝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문헌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무역금융에 관한 국내외의 서적과 논문, 판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문헌연구로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제팩토링이 도입된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왜 활성화 되지 않은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없는 것이다. 이에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Ⅱ. 국제팩토링제도의 일반적 특징

### 1. 국제팩토링의 의의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은 국제상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receivables)을 금융기관인 팩터(factor)가 공급자(supplier)<sup>1)</sup>와 국제팩토링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에게 금융제공(finance for supplier), 신용담보(credit cover), 매출채권관리(accounts receivable administration), 매출채권 추심(collection of receivables)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sup>2)</sup> 상술한 기능으로 국제

1) 국제팩토링에 관한 협약(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1988 May)에서 국제팩토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인 팩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공급자라고 한다. 공급자는 국제상사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되고, 매출채권을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인,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자이다.

2) 국제팩토링에 관한 협약(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제1조 참조.

팩토링은 수출자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금융부담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국제팩토링은 수출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및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도 자신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인 팩터에게 양도하여 금융편의뿐만 아니라 추심, 매출장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아가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의 국제팩토링의 경우에는 무역금융이 차입으로 계상되지 않아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공급자와 팩터간에 국제팩토링계약에 따라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국제양도계약(international contract of assignment)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채권의 양도인 팩터는 양수인이 될 수 있다. 국제팩토링 계약에 따라 양도인인 공급자는 팩터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역금융을 제공받는다(한기문, 2009).

## 2. 국제팩토링의 기능<sup>3)</sup>

### 1) 무역금융 제공

국제상거래에서 수출자인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대금결제의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팩토링계약을 팩터와 체결한 공급자는 만기 이전에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sup>4)</sup>를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신용의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상당한 매출채권을 운영자금으로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자금흐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흐름을 원활히 할 수도 있고, 또한 미리 받은 수출대금으로 새로운 무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품구매, 공장운영, 임금지급 등의 여타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화환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와의 근접국가와의 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용장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선하증권과 같은 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여 화물의 수령이 지체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에는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지만 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상거래에서 대금결제방식을 외상거래방식으로 하는 경우 국

3) 국제팩토링의 효용은 국제팩토링에 관한 무역금융제공, 신용담보, 매출채권관리, 추심, 수출입관리, 정보서비스, 컨설팅서비스 및 회계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논문에서는 국제팩토링협약에서 언급하는 주요한 네가지 기능 무역금융 제공, 신용담보, 매출채권관리, 추심에 관하여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신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의 100%에서 80%까지 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일부지급할 경우에는 만기에 매수인(채무자)으로부터 대금을 추심한 후에 지급한다.

제팩토링을 이용하면 화환신용장거래의 단점을 제거할 수도 있다(한기문, 2009).

## 2) 신용담보

국제상거래에서 대금결제방식은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수출자에게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후송금거래와 같은 외상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상거래방식이 무역거래에서 일반화됨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신규 수입자와의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송정남, 2012). 따라서 수출자가 팩터와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국제팩토링계약을 체결하면 수입자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시 팩터가 매출채권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다(Factoring Chain International, 2004). 단 실무적으로 유념하여야 할 것은 팩터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위험만을 인수하기 때문에 양도된 채권자체의 하자에 대한 위험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송정남, 2012).

## 3) 매출채권의 관리

국제팩토링에서 팩터는 무역금융제공, 신용담보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매출채권관리 업무를 제공한다. 국제팩토링에서 매출채권관리시 팩터는 매도인을 대신하여 관련서류의 작성과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재고관리, 원가계산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팩터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입출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 송부한다(배정환, 2008). 이러한 보고서에는 추심된 금액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부기되고 추심금액에서 수수료, 이자 등 매도인의 부담금이 차감된다. 실무적으로 팩터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출채권장부의 기재, 장부관리, 송장관리, 만기일관리 및 신용전표의 관리 및 확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김동윤, 2012). 이러한 서비스는 매출채권관리 전담인력비용을 절약하고 관리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의 성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4) 추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외상매출채권 담보금융에서는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추심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팩토링에서는 팩터는 외상매출채권을 직접매입하기 때문에 추심과정을 직접 모니터링을 한다(배정환, 2008).<sup>5)</sup> 국제팩토링계약을 체결한 팩터는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인 매수인이 해당 채

권의 변제기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통지를 행하여 추심업무를 행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기일까지 지급을 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추심행위를 행하게 된다(송정남, 2012). 실무적측면에서 국제팩토링에서 팩터는 추심업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추심에 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마케팅 및 새로운 기업 및 시장개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3. 국제팩토링의 유형<sup>6)</sup>

국제팩토링은 매수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송장상의 통화가 다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국내팩토링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국제팩토링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국간에 있는 경우를 국제팩토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국제팩토링은 일반적으로 제휴팩토링(Indirect Factoring)과 직접팩토링(Direct Facto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팩토링은 다시 직접수출팩토링(Direct Export Factoring)과 직접수입팩토링(Direct Import Facto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휴팩토링

국제팩토링에서 팩터는 수출자를 위하여 다수의 국가에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팩토링거래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출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팩터가 매도인의 수출을 위하여 각각의 나라에서 팩토링을 운영하는 비실현실적이다. 왜냐하면 팩터가 직접 각 국가에 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지의 실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제팩토링체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매수인의 국가에 팩터와 협력하여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휴팩토링(또는 Two Factor System)이라고 한다. 이 때 팩터가 매도인의 국가에 있으면 수출팩터(Export Factor)라고 하고, 팩터가 매수인의 국가에 있으면서 수출팩터와 제휴를 맺고 있는 팩터는 수입팩터(Import Factor)라고 한다. 수출팩터와 수입팩터는 자신의 국가의 법, 거래관습 및 신용조사 등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후술하는 단독팩토링에서보다 더 효율적

5) 국제팩토링에서 팩터는 외상매출채권의 신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팩터에게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6) 본 논문에서 국제팩토링의 유형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팩토링연합인 FCI에서 제공하는 국제팩토링서비스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휴팩토링에서 수출팩터는 매도인의 금융과 매출채권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고 송장금액의 추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팩토링을 이용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 첫째, 다수의 국가에서 다수의 매수인에게 자신의 매매거래에 따른 신용위험을 수출팩터와 국제팩토링 약정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 둘째, 매도인은 자신의 언어로 수출팩토링거래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의 국가의 거래관습과 법에 관한 자세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팩터로부터 매출채권관리 및 매수인의 재정상태, 거래관습 및 시장잠재력 등에 관한 최신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출채권관리에 다른 제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및 판매활동에 주력할 수 있다. 넷째,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도 외상거래로도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제휴팩토링을 이용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 첫째, 매수인은 수입팩터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송장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둘째, 매수인은 국제팩토링을 이용하면 신용장개설 및 수입보증금 등과 같은 비용을 절감되고 국제팩토링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제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입자는 외상거래로 국제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김동운, 2012).

제휴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팩터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 첫째, 수출팩터는 많은 국가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도 매도인에게 수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제휴팩토링에서는 매수인의 신용위험을 수입팩터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 셋째, 대금추심을 수입팩터가 하기 때문에 추심을 위한 법률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대금추심을 수입팩터가 하게 된다. 제휴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입팩터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을 분산시켜 새로운 거래를 창출 및 매수인의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FCI, 2002).

## 2) 직접팩토링

### (1) 직접수출팩토링

제휴팩토링은 수출팩터와 수입팩터가 국제팩토링에 개입되지만 단독수출팩토링은 수입팩터가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제휴팩토링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수출팩토링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인이 이웃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에 팩터가 대금의 추심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신용위험의 기꺼이 인

수하는 경우이다. 둘째, 신용보험사가 수출자의 수출매매금액 전부에 대하여 신용담보약정을 체결한 경우이다. 셋째, 팩터가 매도인과 국내에서 상당한 국내팩토링 금액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도인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에 신용위험의 담보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이다. 넷째, 매도인이 제휴팩토링에서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이다. 직접팩토링을 이용하는 매도인은 자신의 국가에서 하나의 팩터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자신의 매출 채권이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 및 운영경비를 낮출 수 있다. 반면에 매도인과 팩터는 매수인의 국가의 법 및 상관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외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한기문, 2009).

## (2) 직접수입팩토링

간접수입팩토링은 매도인이 외국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팩토링과 유사하다. 이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국가에 있는 팩터와 직접 팩토링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매도인은 수출팩토링을 거치지 않고 직접수입팩터로부터 매수인의 신용위험 인수를 제공받는 것이다. 간접수입팩토링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도인이 몇 개국에만 수출할 경우 매도인입장에서는 단지 신용위험인수와 추심의 업무만 필요할 경우이다. 간접수입팩토링을 이용하면 매도인입장에서 매출채권을 매수인의 국가에 위치한 팩터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간접수출팩토링과 마찬가지로 관리 및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다(FCI, 2002). 하지만 국제팩토링약정의 해석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관할, 준거법 적용 등에 애도를 겪을 수 있다. 또한 단독수입팩토링의 경우 해외수입팩터가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중과세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고 외화유출과 관련하여 외환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Noel, Ruddy, 2006).

## Ⅲ. 한·중·일 국제팩토링의 현황<sup>7)</sup>

### 1. 한국의 국제팩토링의 현황

#### 1) 도입

한국에서 국제팩토링서비스는 1989년 6월 중소기업은행이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

7) 본 논문에서 통계자료는 국제팩토링연맹(Factors Chain International: FCI)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FCI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팩토링조직을 가지고 팩토링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였다. 이후 국제팩토링은 2005년 4월 수출입은행이 FCI에 가입하면서 수출팩토링을 제공하였고,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동년에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현재 신한은행은 국제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도 1989년 수입팩토링형태의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7년-2010년 일시적으로 중단한 이후 2011년 다시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국제팩토링은 수출팩토링과 수입팩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일부 외국계은행에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정남, 2012).

## 2) 거래규모<sup>8)</sup>

〈표 1〉한국의 국제팩토링 거래규모에 따르면 2005년 FCI가입한 이후 한국의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2006년 850백만 유로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2,937백만 유로, 2010년 5,079백만 유로, 2011년 8,087, 2012년 8,000백만 유로로 급증<sup>9)</sup>하였고, 이후 2013년 5,000백만 유로로 급감하다가 2014년 및 2015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FCI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제후팩토링의 수출팩토링 거래규모가 2005년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거래규모가 0.1%에서 3%로 급증하였다.<sup>10)</sup>

〈표 1〉 최근 10년간 한국의 국제팩토링 거래규모<sup>11)</sup>

(단위: 백만 EURO)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제팩토링	850	955	900	2,937	5,079	8,087	8,000	5,000	5,150	5,304
국내팩토링	0	0	0	0	0	0	0	7,343	7,563	7,790
합계	850	955	900	2,937	5,079	8,087	8,000	12,343	12,713	13,094

8) 본 논문의 통계자료는 FCI의 annual review 및 통계자료를 FCI의 담당자로부터 직접 이메일을 받아서 제작되었다.

9)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의 해외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무소구조건의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거래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여 진다.

10) [https://fci.nl/en/about-factoring/statistics\(2016.5.1.\)](https://fci.nl/en/about-factoring/statistics(2016.5.1.)).

11) 상계자료 참조.

## 2. 중국의 국제팩토링의 현황

### 1) 도입

중국에서 국제팩토링은 1987년 중국은행이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였다. 이후 2002년까지 중국은행과 교통은행만이 FCI에 가입하여 국제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2001년 Ericsson이 자신의 거래은행인 교통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국제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CITI Bank와 국제팩토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의 은행들이 국제팩토링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耿琪, 2009). 그 결과 2016년 5월 1일 현재 중국에서는 40개사가 FCI가입하여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팩터를 보유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중국의 경우 외국 신용보험사들이 협력형태로 진출해 있고 적극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허은숙, 2009).

### 2) 거래규모

중국의 국제팩토링시장의 2015년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2015년 126,279백만 유로로 2014년 144,529백만 유로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표 2>중국의 국토티링 거래규모에서 살펴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 44,918백만유로, 2012년 71,272백만유로, 2013년 82,677백만 유로, 2014년 144,529백만 유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중국의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전세계 1위이다. 참고로 2015년 중국의 FCI기준 제휴수출팩토링 비중은 31%로 전세계 1위이고, 제휴수입팩토링의 경우에는 17%로 전세계 2위이다.<sup>13)</sup>

<표 2>최근 5년간 중국의 팩토링 거래규모<sup>14)</sup>

(단위: 백만 EURO)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제팩토링	44,918	71,272	82,677	144,529	126,279
국내팩토링	229,952	272,489	295,451	261,573	226,600
합계	274,870	343,759	378,128	406,102	352,879

12) [https://fci.nl/en/members/index\(2016.5.1.\)](https://fci.nl/en/members/index(2016.5.1.)).

13) [https://fci.nl/en/about-factoring/statistics\(2016.5.1.\)](https://fci.nl/en/about-factoring/statistics(2016.5.1.)).

14) 상계자료 참조.

### 3. 일본의 국제팩토링의 현황

#### 1) 도입

일본에서 팩토링서비스는 1971년 처음 도입하였지만, 도입초기에는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98년 10월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팩토링시장이 활성화 되었고, 이후 아시아에서 팩토링이 가장 발전한 국가이다. 2008년 FCI의 통계에 따르면 106,500백만 유로로 영국, 이태리, 독일에 이어 전 세계 4위의 팩토링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팩토링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팩토링시장의 거래규모가 꾸준히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로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팩토링시장을 가지고 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51,072백만 유로로 2008년보다 7년동안 거래규모가 50%이상 감소하였다. 일본의 팩토링은 국제팩토링보다 국내팩토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소구방식의 팩토링을 중심으로 무소구팩토링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허은숙, 2009). 2009년 FCI가입한 팩터가 13개사였지만 2016년 5월 현재 4개사로 급감하였다.

#### 2) 거래규모

일본에서 지난 5년간 팩토링시장규모는 국내팩토링시장규모는 2011년 110,195백만 유로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 53,129백만 유로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도 2011년 1,050백만 유로를 정점으로 국내팩토링시장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거래규모가 감소하였지만, 2015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도 일본의 팩토링 거래규모는 74,530백만 유로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팩토링시장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팩토링시장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11년의 경우에도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국내팩토링시장 규모의 약104배로 주로 국제팩토링 보다는 국내팩토링시장이 발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의 팩토링시장의 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그 비율이 감소되어 2015년에는 약 50배 금액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팩토링시장의 규모가 축소된 비율과 비교하면 국제팩토링 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최근 5년간 일본의 팩토링 거래규모<sup>15)</sup>

(단위: 백만 EURO)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제팩토링	1,050	850	830	660	1,055
국내팩토링	110,195	96,360	76,425	50,412	53,129
합계	111,245	97,210	77,255	51,072	54,184

## IV. 한·중·일 국제팩토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한국 국제팩토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국제팩토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팩토링계약은 채권의 양도계약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국제팩토링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법제도가 미비하다(박광서, 2007). 따라서 국제팩토링계약은 채권양도계약으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적정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상의 규정도 그 절차가 복잡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규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한국의 국제팩토링의 거래실적 및 제공금융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수출기업 대상으로 국제팩토링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금융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하거나 우리나라 주요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지의 전문팩터의 지사나 지점을 우리나라 유치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직접인수하고,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선급금융을 제공하는 직접방식을 고려할 수 도 있다(한기문, 2009). 셋째, 정책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도가 높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의 국제팩토링제공을 지향하고 실제 전도금융이나 신용위험의 전가를 원하는 중소수출기업위주의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팩토링에 관한 인식이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에게 높지 않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적극적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제후방식의 국제팩토링은 수출팩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용위험을

15) [https://fci.nl/en/about-factoring/statistics\(2016.5.1.\)](https://fci.nl/en/about-factoring/statistics(2016.5.1.)).

수입팩터에게 전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팩토링방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팩토링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하면 제휴팩토링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여섯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국제팩토링은 직접방식 수출팩토링 및 제휴방식 수출팩토링만을 제공하고 수입팩토링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sup>16)</sup> 2015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3%로 높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의 특성상 수입의 경우 수출을 위한 수입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제휴방식의 수입팩토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국제팩토링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험에 부보하여 신용을 담보받아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업무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2. 중국 국제팩토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 국제팩토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FCI가입하여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팩토링을 제공하는 팩터들의 국제팩토링서비스는 프랑스, 영국 및 미국 등과 같은 국제팩토링이 발전한 국가들에서 제공하는 국제팩토링서비스와 비교하여 고도화 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괄서비스 팩토링 무소구팩토링 등 다양한 국제팩토링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제팩토링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무역규모와 비교하여 그 규모는 FCI통계에서 보듯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국 중소기업의 무역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팩토링서비스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중의 하나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법규 및 행정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은행권 팩터의 등장으로 국제팩토링시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邓彦琪, 2009).

16) <https://www.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4003001> (2016. 5.1.참조).

넷째, 중국의 국제팩토링은 중소기업보다는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위주로 국제팩토링을 제공한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경제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팩토링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역거래시 대금결제방식으로 외상거래방식보다는 무역보험이나 신용장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최근의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보다 외상거래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국제팩토링의 효용에 관한 적극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국제팩토링의 핵심인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한 법규의 제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劉曼沁·劉國勝, 2011).

### 3. 일본 국제팩토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의 국제팩토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법률·제도의 확립 및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팩토링시장이 급성장하였고 기업의 자금조달의 하나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국내팩토링 거래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국제팩토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이러한 이유에는 일본의 경우 종합무역상사가 발전하여 제조업체가 직접 수출을 하는 것보다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간접방식의 무역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안정적으로 일본의 중소기업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종합상사를 통한 간접수출은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시장확대전략 등에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국제팩토링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표 2>에서도 보았듯이 일본의 무역규모와 비교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그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국제팩토링제공 금융기관의 감소 및 일본의 경제침체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하튼 일본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제팩토링서비스의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다. 셋째, 일괄서비스 국제팩토링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팩터들은 금융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소구조건의 국제팩토링보다 소구조건의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허은숙, 2009).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일관서비스의 적극적 도입 및 무소구조건의 국제팩토링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다. 넷째, 일본의 경우 기업거래에서 주로 어음이 사용되기 때문에 팩토링거래에서 팩터에게 주로 어음이 양도된다. 따라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팩토링은 예외적으로 발생한다. 다섯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및 중국과 비교하여 국제팩토링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는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프랑스 및 미국과 같은 국제팩토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직 상대적으로 국제팩토링의 핵심인 채권양도금지특약 및 대항요건의 구비에 관한 법규가 빈약한 것이 국제팩토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송정남, 2012).

## V. 결론 및 요약

최근 한국 국제팩토링시장의 거래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무역 규모와 비교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한국의 국제팩토링거래규모의 증가는 정책금융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팩토링금융의 지원금액의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 진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 및 신용위험 등을 담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하였듯이 한국의 국제팩토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에 국제팩토링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규를 제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국제팩토링 서비스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기업 및 소수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술하였듯이 국제팩토링서비스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한국의 경우 금융권은 주로 담보대출에는 익숙하나 국제팩토링서비스와 같은 신용대출형태의 경우 이국간에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FCI와 같은 국제팩토링협회에 가입하여 제휴방식의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최근 국제대금결제방식이 외상거래방식으로 변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및 금융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장이나 무역보험에는 익숙하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국제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학원이나 금융권, 금융연수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윤(2012), “국제팩토링거래의 활성화 요건과 대책”, 「무역연구」, 제8권 제4호, pp.436-437.
- 박광서(2007),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수출팩토링활용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pp.58-59.
- 배정환(2008),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으로서 국제팩토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p.112.
- 송정남(2012), “한국 팩토링제도 운용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15-156.
- 한기문(2009), “국제팩토링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pp.3-139.
- 허은숙(2009),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팩토링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제12권 제1호, pp.179-182.
- 耿琪(2009), 论我国的国际保理业务, 现代商贸工业, p.323.
- 邓彦琪(2009), 善我国国际保理法律制度的思考, 法制与社会, p.47.
- 刘曼沁·刘国胜(2011), 我国国际保理业务发展现状及对策分析, 企业经济, p.183.

### 웹사이트

<https://www.koreaexim.go.kr>

<https://fci.nl/en>

- FCI(2002), *Guide to the Establishment of a Factoring Operation*, Factoring Chain International, p.4.
- Noel, Ruddy(2006), *Salinger on Factoring*, 4th ed, Sweet & Maxwell Ltd., pp.122-132.
-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1988 May.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Factoring of Korea, China and Japan

Se-Hun Park

---

### Abstract

International factoring is necessary for small & medium export companies because using documentary credit has been declined and credit transaction has increased. In Korea, however, only EXIM bank supports the factoring service, apart from foreign banks.

Even though the amount of international factoring has increased in Korea, factoring service is at a standstill, compared to its trade volume. Perhaps there are a few reasons but the biggest reason for the indifference to the factoring servic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nd inadequate legal system in Korea.

This paper aims to compare factoring service in Korea with that of China and Japan. And it also suggests the improvement of problems to the factoring service by analysing the examples of business practice.

---

<Key Words> International Factoring, Factor, Credit Cover, Account Receivables, Collection